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827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9. 11.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20. 접수 제2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여수세무서장, 여수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가소72475)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2. 9. 28. C는 D에 39,305,434원과 그중 9,200,328원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이하 'E'라 한다)는 2019. 8. 8. 원고에 C에 대한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E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21. 3. 10.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C는 2019. 11. 6. 부친 F의 사망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는데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상속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20. 접수 제272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이는 채무자인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20. 접수 제2725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②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실상 C의 상속포기에 해당하는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③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이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④ 이 사건 분할협이가 사해행위라고 하여도 C의 상속지분 가액 1,139,333원을 배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무자인 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광주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가소72475 판결이 C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선고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이 반복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바, C가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④ 주장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목 록

[토지]

1. 전라남도 순천시 대 235㎡
2. 전라남도 순천시 대 205㎡

[건물]

전라남도 순천시
 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주택

92㎡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35㎡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6㎡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6㎡

